

2018년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계획을 「축산법」 제1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시험일정

구 분	시 기	장소공지	합격자발표	이의제기 기간
원서접수	10. 29.(월) ~11.12.(월)	-	-	10. 29.(월)~ 11. 16.(금) (최소가능 기간)
필기시험	12. 8.(토) 10:00~11:40	11. 28.(수)	12. 12.(수)	12. 13.(목)~12.19.(수)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실기시험	12. 22.(토)	12. 12.(수)	12. 27.(목)	12. 28.(금)~ 19. 1. 7.(월) (합격자 발표 후 10일간)

○ 합격증 교부: 2018. 12. 27.(목)~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매 과목 40점 이상 5과목 총점 260점 이상)에 한하여
실기시험 실시

○ 이의제기: 합격자발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담당자 전자우편
(suna722@korea.kr)으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추가합격자 발표: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자는 개별통보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통보

2. 시험과목

구 분	과목명	비 고
필기과목 (5과목)	축산학개론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 대상: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 - 면제 과목: 4과목 (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실기)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실기과목	가축인공수정실기	

- 외국에서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응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서 받은 면허증 사본을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 바람

3. 시험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실기시험: 가축인공수정실기 작업형

4. 응시자격

- 「축산법」 제1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축산법」 제12조제2항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및 시간: 2018. 10. 29.(월)~11. 12.(월)

※ 원서 접수는 기간 내 24시간 가능. 단, 마지막 날(11월 12일)은 21:00에 접수 마감.

○ 접수처: (주)진학사 응시접수(<http://univ.jinhakapply.com/univ800401.aspx>)

- 응시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록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면허증 사본 jpg, gif 등 파일로 원서접수시 등록

※ 응시자가 접수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수수료: 6,000원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10. 29.(월)~11. 16.(금) / 09:00~18:00)까지는 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기간 내 취소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cm×4cm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뒤 그림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 불가합니다.
- 본 시험의 시행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 응시자는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에 적절한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하여 주시고, 시험 도중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 시험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18년 가축인공수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농촌진흥청장 귀하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제출서류	외국에서 수정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증 사본	수수료 6,000원

농촌진흥청 시행 2018년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한자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시험일자: <필기> 2018. 12. 8.(토) 10:00~11:40, <실기> 2018. 12. 22.(토),
 2. 시험장소: 국립한국농수산물대학교
 - ※ 필기 및 실기시험 장소가 동일하며, 실기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실시
 - ※ 주소: (5487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공취팔주로 1515 국립한국농수산물대학교, ☎063-238-9114
 3.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사진등록),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4.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 ※ 학생증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이하 학생만 해당(대학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음)
 5. 수험자는 시험 시작 이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중도퇴실 가능시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8.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9. 본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는 불가
 10. 수험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응시표를 지참한 후 검정당일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